

■ 2025년도 CNK실버빌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CNK실버빌은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면회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②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류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종서약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 부담 비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CNK실버빌 급여 비용

【 CNK 실버빌 급여 비용 】

※ 등급의 임상자는 기관 자율 수가 적용 (시정 : 2025. 1. 1. 시행, 30일 / 31일 기준)

【24년수가 1등급 84,240 원 ,2등급 78,150 원 ,3,4,5등급 73,800원】

1. 【 요양보호사 비율 2.1 : 1 적용 ,급여 항목 등급별 수가비용 7.37% 인상 】

구 분	1 일 수 가	인 수	총 급여 비용	본인부담	공단부담	본인부담	공단부담	본인부담	공단부담
				00% 금액	02% 금액	12% 금액	00% 금액	20% 금액	00% 금액
1등급	80,400	30	2,713,500	217,080	2,496,420	325,620	2,387,880	542,700	2,170,800
2등급	80,910	30	2,517,300	201,380	2,315,920	302,070	2,215,230	503,460	2,013,840
3,4,5 등급	79,240	30	2,377,200	190,170	2,187,030	286,260	2,091,940	475,440	1,981,760
구 분	1 일 수 가	인 수	총 급여 비용	본인부담	공단부담	본인부담	공단부담	본인부담	공단부담
				00% 금액	02% 금액	12% 금액	00% 금액	20% 금액	00% 금액
1등급	80,400	31	2,803,960	224,310	2,579,640	346,470	2,457,480	560,790	2,240,190
2등급	80,910	31	2,601,210	206,080	2,395,130	312,140	2,356,070	520,240	2,080,970
3,4,5 등급	79,240	31	2,456,440	196,510	2,259,930	294,770	2,161,670	481,280	1,985,190

2. 【요양보호사 비율 2.3 :1 적용 ,급여 항목 등급별 추가비용 2.12% 인상】

구분	1일 수가	일수	총급여 비율	본인부담	공인부담	본인부담	공인부담	본인부담	공인부담
				0% 금액	92% 금액	12% 금액	0% 금액	20% 금액	80% 금액
1등급	86,030	30	2,580,900	206,470	2,374,430	309,790	2,271,230	516,180	2,064,720
2등급	79,810	30	2,394,300	191,540	2,202,760	287,310	2,106,990	478,860	1,915,440
3,4,5 등급	75,370	30	2,261,100	180,880	2,080,220	271,300	1,986,770	452,220	1,806,880
구분	1일 수가	일수	총급여 비율	본인부담	공인부담	본인부담	공인부담	본인부담	공인부담
				0% 금액	92% 금액	12% 금액	0% 금액	25% 금액	80% 금액
1등급	86,030	31	2,666,930	213,350	2,453,580	320,030	2,348,900	533,280	2,133,550
2등급	79,810	31	2,474,110	197,820	2,276,290	296,860	2,177,220	494,820	1,879,290
3,4,5 등급	75,370	31	2,336,470	186,910	2,149,560	280,370	2,056,100	467,290	1,959,190

3.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등급외자 동일적용) 2024년 대비 1식 500원 인상】

서비스 항목	내 용	30일	31일
식재료비	4,000원/1식	360,000	372,000
간 식 비	1,000원/1일	30,000	31,000
계약의사 본인부담금	초진비용 X 본인부담률 + 재진비용 X 본인부담률 (입소 처음일) 재진비용 X 본인부담률 + 재진비용 X 본인부담률 (입소 다음날 이후)		
병원치료비	진료 및 약제		본인부담
병원물리치료			0% 실버를 부담
병원운임			무료, 시외(본인부담)
이 - 미용비	월1회		무료

4. 계약자의 의무

계약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계약 대상자가 지정보호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계약대상자' 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3) 기관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기관' 의 의무

- 1) 계약대상자의 건강관리 협조
- 2) 계약대상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권의 제공
-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계약대상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 1) 계약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2) 계약대상자의 물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4) 계약대상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자의 해지

- 1) 계약대상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기관의 해지

- 1) 계약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3) 계약대상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기관은 계약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계약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제반사항의 준수

- ① 보호자는 기관에게 비급여 계약 외의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를 추가 계약 없이 요구하지 않는다.
- ② 계약대상자는 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기관이 정한 시간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③ 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대상자의 외출에 의한 실종 및 사고, 보호자의 음식물 반입에 의한 사고, 계약대상자의 노환이나 스스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 계약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신체 및 재산에 가한 상해 및 망실, 기관의 직원과 소유재산에 가한 상해 및 망실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 및 보호자가 이와 관련된 치료비용 등 부대비용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⑤ 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계약대상자의 신상에 관련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C N K 실 버 빌